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김미숙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변 론 종 결 2021. 5. 11.

판 결 선 고 2021. 6. 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20. 3.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3. 10. 접수 제15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7. 8. 31. 2,5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9. 4. 1,84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340만원을 변제기 2017. 9. 20.,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F의 모친인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9. 18. F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4,3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촉탁위임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672호).

다. F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2. 27.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원주지원 H). 그러자 C은 2020. 3. 10.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원주시 D아파트 E호를 큰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3. 10. 접수 제158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C의 연대보증채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4,340만원의 한도 내에서 F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F가 I와 동업으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그 후 F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I가 주점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I가 F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F의 주채무는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C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데(민법 제454조 제1항), I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가 F에 대한 관계에게 F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단순한 ‘이행인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F의 주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C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바 없다고도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F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F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가 C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큰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것임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는 C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C의 노후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C이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C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큰 아들인 피고가 모친 C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의 선의 주장은 사해행위 관련 법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